

화재보험 요율할인제도의 발전방향

- 손해예방의 촉진 측면에서 -



이 언 석
금융감독위원회의 보험감독과 사무관

1. 머리말

최근 발생한 스프링클러의 급수관 미연결과 같은 부실시공 사례, 공장외벽의 가연성 샌드위치패널 시공 등 화재안전과 직결되는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 및 국민의 의식개혁과 함께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지하다시피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사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서, 손실을 사고 이전의 상태로 신속하게 복구하여 줌으로써 일상생활은 물론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시켜 주는 필수

적인 보험이다. 하지만 제도를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화재보험의 사후적 보상기능뿐만 아니라 위험을 사전적으로 예방 또는 경감시키는 손해방지 기능까지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요율 할인제도의 적절한 운영이다. 할인제도는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그에 합당한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부과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보험가입을 촉진시켜 계약자의 손해방지를 확대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화재보험을 중심으로 요율할인제도의 의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고찰해 봄으로써 화재보험 이용자의 보험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손해방지를 촉진할 수 있는 보험제도의 순기능적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2. 화재보험요율의 개요

가. 화재보험요율의 형태

일반적으로 보험요율은 요율의 산출 및 적용방법에 따라 집단위험분류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등급요율(class rate)과, 개별위험의 위험상황 또는 경험손해실적에 기초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성과요율(merit rates plans)로 구분된다. 성과요율은 다시 위험평가 및 적용 방법에 따라 경험요율(experience rate), 예정요율(schedule rate), 소급요율(retrospective rate) 등으로 구분된다.

등급요율은 개별계약자의 보험료를 위험이 유사한 계약자 집단의 경험실적에 의하여 산출하는데, 요율산출요소(rating factor)로 사용되는 위험요인(risk factor)은 손해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대부분의 계약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측정이 용이하여야 한다.

한편 획일적인 등급요율만으로는 개별계약자의 위험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성과요율제도가 개발되었다.



화재보험요율의 형태

성과요율은 실무적으로 개별계약자의 경험손해 및 위험상황을 반영하여 등급요율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화재보험요율은 등급요율을 근간으로 하면서 성과요율 중 예정요율과 경험요율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사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겠다.

나. 화재보험요율의 구성 및 보험료 산출체계

화재보험요율은 기본요율, 할인요율, 할증요율, 특약요율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재고자산의 경우 재고자산할증 가산)에 할인할증률을 곱하여 산출하고, 특약에 가입할 경우 특약보험료를 가산하게 된다.

$$\text{물건별, 건물구조별, 용도별 기본보험료} \times \text{할인할증률} + \text{특약보험료} = \text{적용보험료}$$

화재보험료의 산출체계

기본요율은 보험목적인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4개 건물구조급별, 3개 물건(주택, 일반, 공장)별 및 세부 업종별로 구분된다. 할인할증요율에는 고층건물할증, 공지할인, 소화설비할인, 불연내장재할인, 재고자산할증요율, 주방·화상·방화구획할인, 특수건물할인, 방위산업체할인, 우량물건할인, 고액보험계약할인, 계속계약할인이 있다. 또한 화재이외에 풍수재위험 등을 확장하여 담보하는 다양한 특약요율이 운영되고 있다.



3. 화재보험 요율 할인제도

가. 요율할인제도의 의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재보험 기본요율은 건물의 구조급수와 사용하는 용도를 기본적인 요율변수로 하여 요율수준을 구분하고 있다. 이때 기본요율을 지나치게 세분화할 경우 통계적 신뢰도가 저하되고 요율체계가 복잡해져서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기본요율은 단순화한 대신에 화재발생 빈도 또는 손해심도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기본요율에 반영시키기 어려운 요인들을 감안한 할인할증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요율할인제도는 위험집단 전체의 실적에 의하여 결정된 요율이 그 집단을 구성하는 모든 보험계약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급요율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보험계약자간 공정한 차등을 도모하고 보험가입을 유도하여 계약자의 손해방지 및 경감을 촉진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소화설비할인, 불연내장재할인 등과 같이 시설에 관련된 할인제도는 화재손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우량한 설비의 설치를 장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겠다.

나. 할인요율의 종류 및 특징

(1) 할인요율의 종류

할인요율은 그 성격에 따라 위험평가와 관련된 할인과 계약관련 할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험평가에 의한 할인은 공지할인, 소화설비할인, 주방·화상·방화구획할인, 불연내장재할인, 특수건물할인, 방위산업체할인, 우량물건할인 등이 있으며, 계약조

건에 의한 할인은 고액계약할인, 계속계약할인, 자기부담금설정에 따른 할인 등이 있다.

위험평가와 관련된 할인요율 중 공지할인은 외부연소위험을 수정하는 요소로, 소화설비할인, 주방·화상·방화구획할인, 불연내장재할인은 자화(自火)위험을 수정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특수건물할인과 방위산업체할인은 제도적인 특별요율의 형태로 운영되는 특성이 있다.

이들 중 특수건물할인과 우량물건할인은 성과요율 중 예정요율의 형태로 운영된다. 특수건물할인은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된 화재위험도를 지수화하고 이를 5개 안전등급으로 구분하여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우량물건할인은 공장물건에 대하여 현장조사에 의한 위험평가와 손해율에 의한 결과를 점수화해서 이를 할인율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2개 할인제도 모두 한국화재보험협회의 현장점검을 통하여 운영되는 점검요율의 특징이 있다.

이밖에 보험회사별로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요율을 할인할증하는 개별할인할증기준(SRP ; schedule rating plan)이 있다.

(2) 주요 할인요율의 특징

(가) 공지할인

공지할인은 건물 외부로부터의 연소위험을 측정하는 요소로서 건물의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연소위험이 없거나 감소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동 할인은 주택물건과 일반물건에만 적용되

며, 건물의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건물 및 그 수용동산에 대하여 공지할인을 적용한다. 할인율은 대면건물의 건물구조급수와 공지거리에 따라 10%, 20%를 적용한다.

(나) 소화설비할인

소화설비할인은 화재발생시 손해의 크기를 경감시킬 수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적용되는 할인이다. 소화설비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보다 강화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방기본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최저할인율 정도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소화설비할인은 화재시 유효한 성능확보 및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험개발원이 정한 「소화설비규정」에 의거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소화설비할인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소화설비할인은 소화설비의 종류에 따라 3%~60%를 적용하며,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소화설비에 대하여 할인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 다만, 2종 이상의 소화설비가 병설된 경우에도 최대 할인율은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 불연내장재할인

불연내장재할인은 건물의 내장재로서 가연성 재료 대신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는데 따른 손해심도 및 내부연소위험의 감소효과를 감안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화재위험의 경감과 함께 신뢰성 있는 불연내장재의 사용을 장려하는 측면이 있다.

할인율은 건물구조급수가 1급 또는 2급인 건물로서 반자를 설치하지 않거나 반자에 사용한 내장재가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인증한 불연재료(FILK 인증품)인 경우 5%를 적용한다.

(라) 특수건물할인

특수건물할인은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동산 제외)에 대해 적용하며,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실사에 따라 물건별로 할인율을 차등 적용한다.

할인율은 물건별로 설정된 기준할인율(주택 30%, 일반물건 특수건물 10%~30%, 공장물건 25%)에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산출한 위험도지수에 의한 안전등급별 조정계수(0.7~1.3)를 곱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특수건물 기준할인율이 10%인 물건의 경우 위험도에 따라 최소 7%, 최대 13%의 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마) 우량물건할인

우량물건할인은 1991년 도입된 대표적인 성과요율제도로서 공장물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동일 공장구내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가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과거 5년간 화재보험계약의 평균손해율이 40% 미만인 계약으로 하고 있다. 할인율은 5개년 계약자기준 손해율과 현장실사를 통한 위험평가 결과에 의하여 점수화한 후 이를 산출식에 의해 할인율로 전환하는 Point Rating System으로 운영되며, 보험개발원장이 정한 “우량물건할인율 산출규정”에 의거 한국화재보험협회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계산한 할인율을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할인율은 2%~25%가 적용되며, 특수건물(동산제

외)에 대해서는 특수건물할인을 감안하여 최대 10%까지만 할인을 적용한다.

(바) 고액보험계약할인

고액보험계약할인은 1증권당 보험가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고액보험계약에 대하여 가입금액의 구간에 따라 보험료를 2%~23%까지 차등하여 적용하는 사업비 관련 할인이다. 동 할인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1증권당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의 보험료에 대한 비율이 고액계약일수록 작아지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사) 계속계약할인

계속계약할인은 동일한 보험회사와 동일 위험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사업비 부분의 절감요인을 반영하는 할인이다. 할인은 5%를 적용한다.

4. 화재보험 요율할인제도의 발전방향

가. 요율체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

어느 보험에서나 마찬가지로, 화재보험의 요율할인제도 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계약자간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요율산정 원칙의 하나로서,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산출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할 것과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129조).

할인제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위험성과 사고빈도·손해심도와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평가하고 요율의 적정성을 합리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또한 손해의 감소와 관계되는 항목의 적용대상 및 기준을 공정하게 설정하고 그 기여비율만큼 할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방재기술의 발전, 새로운 건축공법의 개발 등 화재보험의 위험요소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할인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업계 및 관련기관에서 현행 할인제도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여 손해와의 관계성이 떨어지는 할인항목을 폐지·보완하거나 할인을 수준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등의 관리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새로운 할인항목의 개발작업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손해예방효과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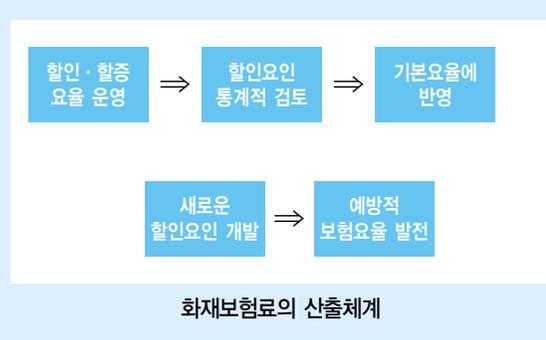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절감시켜 주면서도 보험회사의 손해율과 수익성을 안정시킬 수 있는 요율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설비 안전기준의 충족여부와 연계된 요율할인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통해 화재보험의 보급 촉진 및 안전문화의 확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면 이는 개별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보험사업자 및 국가사회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예방적 요율체계 구축의 한 방법으로 '할인요율의 기본요율화'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기본요율은 모든 대상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조건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개별 가입자의 특이사항을 일률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할인·할증요율을 활용하게 된다. 그런데 일반 대상물건에 보편적으로 할인요인을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관련통계가 누적된다면, 요율산출단계에서 할인요소를 기본요율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기본요율의 범위를 확대시킬 경우 새로운 기본요율에 적용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할증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때 보험계약자들은 할증을 회피하기 위하여 방재시설 확충 등의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며, 보험회사는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새로운 할인요인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손해예방을 촉진할 수 있는 요율체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할인요인을 기본요율에 반영할 경우 요율체계의 단순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감안하면 전문적인 통계적 신뢰성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성과요율의 효율적인 운용

화재보험의 경우 성과요율은 할인제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특수건물할인 및 우량물건할인 제도는 보험가입을 확대하고 일정부분 손해통제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만, 그 대상이 한정되고 할증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정확한 위험평가와 보험계약자간 공평성 제고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성과요율에 있어서 단순히 할인제도만 적용하기 보다는 할인·할증제도를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맺음말

이제까지 화재보험의 요율할인제도의 종류별 특징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보험상품의 개발과 운용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경영안정성과 건전성 유지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보험이 가지는 공익적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확대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추구하는 것도 가치있는 일일 것이다. 화재보험의 요율할인제도가 '공정한 차별'에 근거한 합리적 보험료 차등화를 통해 보험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보험가입의 증가를 유도하여 손해예방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

본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감독당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